

일자리안정지원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지원금 반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07. 28.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일자리안정지원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07. 28. ~ 2026. 08. 11.(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징수 담당자(Tel. 031-259-0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191호

(단위 : 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부과대상자	상 호(현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 사유
주 소		납부금액(총계)		주민등록(법인)번호	독촉장	
12-59-596	일자리안정자금	주식회사 엠**글로벌홀**	주식회사 엠**글로벌홀**	331-81-00***	환수금 납입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예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 *06호 금*프라자 (죽전동)		965,760원		120111-08484**	-	폐문부재 등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6. 07. 28.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